

의안번호	2203496
의 퇴 인	유영하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계번호	24D3279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정착지원후손에게 초기정착비,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82억 2,000만원, 2030년 23억 8,7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77억 2,400만원(연평균 155억 4,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초기정착비 지원(안 제7조)	68,149	2,288	2,288	2,288	2,288	77,300	15,460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안 제8조)	1	-	-	-	-	1	0
보훈재가복지서비스(안 제10조)	69	78	83	93	99	423	85
합 계	68,220	2,366	2,371	2,381	2,387	77,724	15,545

주: 1) 추계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은 인원을 제정안에 따른 대상으로 하였으며, 과소추계의 가능성이 있음

2)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초기정착비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착지원후손에게 소득인정액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기정착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8조(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려는 정착지원후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0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착지원후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초기정착비 지원)	○	-
2	안 제8조(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 등)	○	-
3	안 제10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이 추계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은 인원을 제정안에 따른 대상자로 적용하여 추계함
- 제정안은 정착지원 대상의 요건으로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 일 것,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람이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에 국외로 이주하였을 것,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등을 정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상 등록 유족의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로, 제정안에 따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고손자녀 현황은 부존재
 - 법무부에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인정된 후손 인원은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영주귀국 증·고손자녀의 인원 파악이 불가함
 - 다만,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훈부에 후손확인을 의뢰하며, 국가보훈부는 2007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후손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자료의 한계로 추계기간 동안 사망인원은 없는 것으로 하고, 신규유입 인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제정안에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현행법상 정착지원대상에 제외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계안정 및 초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신규 유입 인원뿐만 아니라 기존 인원 모두를 포함하여 추계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의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초기정착비 지원(안 제7조)

- 제정안에 따라 정착지원후손에게 초기정착비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초기정착비 지원 대상가구수를 추정한 후 가구원수별 정착지원금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기존사업 현황)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영주귀국정착금’ 사업¹⁾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1995년도부터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음
 - (대상자) 제정안에 따른 초기정착비 지급 대상자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고손자녀로서, 고손자녀는 증손자녀가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여 이 추계에서는 증손자녀에 한정(증손 모두 고손을 동반하여 귀국하였고, 고손 홀로 귀국한 사례는 없음)
 -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은 인원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증손 509명, 고손 238명으로 총 747명으로 나타남([표 2])
 - 법무부 제출자료(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연령자료 제공하지

1) 2024년 기준 10억 6,000만원 편성

않음)에 따르면 연도별 독립유공자 후손 인원(자, 손, 증손, 고손, 내손 이하 모두 포함)은 [표 3]과 같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총 467명으로 매년 평균 47명의 신규인원이 발생하며, 이중 증손은 [표 4]의 41%에 해당하는 19명으로 예상되어 신규 편입 증손인원은 매년 19명으로 추정하고, 고손은 [표 4]의 27%에 해당하는 13명으로 예상되어 신규 편입 고손인원은 매년 13명으로 추정([표 5])

[표 2] 독립유공자 후손 현황: 2007~2023년

(단위: 명)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증손	31	98	61	67	46	38	29	19	5	27	4	17	12	17	12	24	2	509
고손	14	17	29	25	34	8	23	15	6	20	2	11	4	8	6	16	0	238

자료: 국가보훈부

[표 3] 연도별 특별귀화 독립유공자 후손 인원 현황: 2014~2023년

(단위: 명)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연평균
인원	44	34	66	42	47	66	37	38	58	35	467	47

자료: 법무부

[표 4]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인정 후손 중 증손·고손 비율 현황: 2015~2024년 6월

(단위: 명,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	합계	비율 (%)
자	0	2	0	1	0	0	0	1	0	0	4	1
손	4	22	6	11	8	10	9	8	1	4	83	27
증손	5	27	4	17	12	17	12	24	2	6	126	41
고손	6	20	2	11	4	8	6	16	0	10	83	27
내손이하	0	1	0	7	1	0	0	2	0	1	12	4
합계	15	72	12	47	25	35	27	51	3	21	308	100

자료: 국가보훈부

[표 5] 독립유공자 증손·고손 수 추정: 2023~2030년

(단위: 명)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증손 누적인원	509	528	547	566	585	604	623	642
고손 누적인원	238	251	264	277	290	303	316	329
합계	747	779	811	843	875	907	939	971

주: 2024년부터는 추정치로서 증손 및 고손이 매년 각각 19명(47명 중 41%), 13명(47명 중 27%)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단가) 초기정착비는 1인가구 8,900만원, 2~3인가구 1억 2,800만원, 4인 이상 1억 5,300만원으로 추계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가구수 비율은 최근 6년간 평균비율을 적용

[표 6] 연도별 정착금 지급단가 현황

(단위: 만원)

가구별 인원구성	1인	2~3인	4인이상
2005.6.1.~2019.12.31.	4,500	5,500	7,000
2020.1.1.~2022.12.31.	5,000	6,000	7,500
2023.1.1.~현재	8,900	12,800	15,300

자료: 국가보훈부

[표 7] 초기정착비 지급 가구수 현황: 2019~2024년 6월

가구	'19	'20	'21	'22	'23	'24. 6.	합계	비율 (%)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경우	—	—	—	—	2	—	2	—
세대주인 유족 2명 이상 중 가구원 1명만 있는 경우	2	4	2	1	3	1	13	27.7
세대주인 유족 2명 이상 중 가구원이 세대주 포함 2~3명의 경우	6	2	6	6	5	3	28	59.6
세대주인 유족 2명 이상 중 가구원이 세대주 포함 4명 이상의 경우	2	2	1	1	—	—	6	12.8
합 계	10	8	9	8	10	4	49	100

주: 1)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경우는 최근 6년간 2명으로 미미하게 발생하므로 비율 계산에서 제외

2)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 (소요비용) 대상가구수에 가구원 수 비중, 가구원수별 지급단가를 곱하면 향후 5년간 총 773억원으로 예상

[표 8] 초기정착비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대상자(A, 가구)		566	19	19	19	19	—
지급단가 (C, 백만원)	1인가구	89	89	89	89	89	—
	2-3인가구	128	128	128	128	128	—
	4인이상	153	153	153	153	153	—
가구수 비중 (B, %)	1인가구	27.7	27.7	27.7	27.7	27.7	—
	2-3인가구	59.6	59.6	59.6	59.6	59.6	—
	4인이상	12.8	12.8	12.8	12.8	12.8	—
소요비용(A x B x C, 백만원)		68,149	2,288	2,288	2,288	2,288	77,300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정착지원후손에게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정한 후 취업지원 연간 단가를 곱하여 산출
 - (기존사업 현황) ‘취업지원’ 사업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직업상담사 인건비, 취업능력개발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를 제공

[표 9] 최근 4년간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현황: 2020~2024년

(단위: 명,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추정치)	평균
대상자 (A)	149	90	86	68	107	100
소요비용 (B)	27	17	16	17	28	21
지원단가 (B÷A)	0.18	0.19	0.19	0.25	0.26	0.21

자료: 국가보훈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상) 제정안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로 한정함
 - － 제정안에서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는 증손자녀가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증손 모두 고손을 동반하여 귀국하였으며 고손 홀로 귀국한 사례는 없으므로 증손자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고 가정
- (지원 비중) 2024년 8월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수는 8,928명, 취업지원 대상자수는 107명으로 취업지원 비중은 1.2%로 나타나 이를 적용
- (단가) 취업지원단가는 [표 13]의 최근 5년간 지원단가의 평균인 21만원으로 가정
- (소요비용) 대상자 수에 취업지원 단가를 곱하면 향후 5년간 147만원으로 예상

[표 10] 취업지원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A, 명)	566	19	19	19	19	-
지원비중(B, %)	1.2	1.2	1.2	1.2	1.2	-
지원대상(C=A x B, 명)	7	0	0	0	0	-
지원단가(D, 백만원)	0.21	0.21	0.21	0.21	0.21	-
소요비용(C x D, 백만원)	1.47	-	-	-	-	1.47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안 제10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의 후손 또는 그 동반가족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추계 방법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추정한 후 연간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
 - (기존사업 현황)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에서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관련 공무원 근로자(사회복지사, 재가보훈실무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고령 보훈대상자(독거·노인부부세대)에게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하여 가사·건강·편의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표 11] 최근 5년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실적(독립유공자 포함):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대상자(A, 명)	15,945	15,954	15,984	13,052	11,813	14,550
소요비용(B, 백만원)	42,487	43,633	43,709	42,225	40,627	42,536
지원단가(B÷A, 백만원)	2.6	2.7	2.7	3.2	3.4	2.9

주: 재가보훈실무관(공무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만 분리하는 것은 불가

자료: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상) 제정안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는 [표 5]의 독립유공자 후손(증손 및 고손자녀) 수에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 유족 지원율인 2%를 곱하여 추정

- (단가) 최근 5년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단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23년 지원단가 340만원에 최근 5년간 연평균상승률 6.3%를 곱하여 산출
- (소요비용) 추정된 대상자 수에 연간 지원단가를 곱하면 향후 5년간 4억 2,300만원으로 예상

[표 12]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A, 명)	843	875	907	939	971	—
지원비중(B, %)	2.0	2.0	2.0	2.0	2.0	—
지원대상(C=A x B, 명)	17	18	18	19	20	—
연간지원단가(D, 백만원)	4	4.3	4.6	4.9	5.2	—
소요비용(C x D, 백만원)	69	78	83	93	99	423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추계결과

- 정착지원후손에게 초기정착비,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77억 2,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초기 정착비	68,149	2,288	2,288	2,288	2,288	77,300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1	—	—	—	—	1
보훈재가복지서비스	69	78	83	93	99	423
합 계	68,220	2,366	2,371	2,381	2,387	77,724

주: 1) 추계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받은 인원을 제정안에 따른 대상자로 하였으며, 과소추계의 가능성이 있음
 2)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